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원 인 호	94
--------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'97. 2. 13.
발의자 : 김옥자 의원
외 5인

1. 제안이유

국내여비규정이 개정(대통령령 제15,247호 '96.12.31) 공포되어 국내여비의 숙박료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(제15조관련 별표6의 비고3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른 인상율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코자 개정함.

2. 주요골자

- 여비의 구분중 『현지교통비』를 『일비』로 용어 변경함.
(안제6조 및 별표1)
- 국내여비지급기준표(별표1)중 일비(종전 : 현지교통비)를 6,500원에서 10,000원으로 인상하고, 숙박료를 의장·부의장의 경우 37,500원에서 41,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8,000원에서 19,500원으로 각각 인상함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(별표6 비고3)
- 국내여비규정('96.12.31 개정 내용 참조)

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“현지교통비”를 “일비”로 한다.

별표 1중 현지교통비(1일당) 및 숙박료(1야당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 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
10,000	41,000
10,000	19,500

별표 1의 비교란의 제1호중 “현지교통비”를 “일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<p>제6조(여비의 종류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·선박·항공·자동차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구분한다.</p>	<p>제6조(여비의종류)①----- ----- -----,일비,-----.</p>																		
<p>(별표 1) 중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 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 지 교통비 (1일당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숙박료 (1야당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장· 부의장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,5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,50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,5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,0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(중략)--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</p>	구 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의 장· 부의장	6,500	37,500	의 원	6,500	18,000	<p>(별표 1) 중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 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 비 (1일당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숙박료 (1야당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장· 부의장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1,00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,5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-----일비와-----</p>	구 분	일 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의 장· 부의장	10,000	41,000	의 원	10,000	19,500
구 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																
의 장· 부의장	6,500	37,500																	
의 원	6,500	18,000																	
구 분	일 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																
의 장· 부의장	10,000	41,000																	
의 원	10,000	19,500																	

< 참고자료 >

▶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관련 별표6의 비고 3

[별표 6]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15조 관련)

“지급기준표 내용 생략”

비고 : 1. (생략)

2. (생략)

3.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
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
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

▶ 국내여비규정 개정령 (대통령령 제15,247호 '96.12.31)

: 별 첨

<p>10,000원 내지 15,000원에서 월 20,000원으로 인상하고, 지금 대상에 特別市 및 廣域市의 幼稚園 또는 初等 schools에勤務하는 教員도 포함함(속別表 11 第2號바目).</p> <p>사) 下士官으로 服務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下士官에게 지급하 는 軍人등의 奖勵手當의 支給額을 월 150,000원이하에서 월 200,000원이하로 引上함(속別表 11 第4號과목)</p>		<p>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3항중 "현지교통비"를 각각 "일비"로 한다. 제19조제2항중 "이동거리 및 운송비를"을 "이동거리·운송비 및 접객 ·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등을"으로 한다.</p> <p>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"현지교통비"를 각각 "일비"로 한다.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의 제4호중 "교육부 교육정책실장 및 서 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, 중앙교육연수원장인 장학관"을 "교육 부 초중등교육실장,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"으로 하고, 통보 제2호(2) 해당공무원란의 제4호중 "재외국민교육원장, 해외교류협력단장 부부장·중앙교육연수원 부장"을 "교육행정연수원장인 장학관, 국립교육 평가원 부장"으로 한다.</p> <p>별표 1의2제3호의 지급기준란중 "공무원임용및시행규칙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적 용예정체급"을 "공무원임용및시행규칙 별표 9의 경일예정체급"으로 한다.</p> <p>별표 2중 현지교통비(1일당)란 및 숙박료(1야당)란을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1996년12월31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김한규 총무처장관</p>		<p>대통령령 제15,247호 국내여비규정증개정령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국내여비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 한다.</p> <p>제3장의 제목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 한다.</p> <p>제15조제1항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, 동조제2항중 "현지교통 비"를 "일비"로,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, 기금화자 수녀한나는 "일비"로, 기금한나는 "일비"로 하며, 동조제3항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, 기금한나는 "일비"로 한다.</p>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일 비</th> <th>숙박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일당)</td> <td></td> <td>(1야당)</td> </tr> <tr> <td>주</td> <td>10,000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제1호</td> <td>10,000</td> <td>41,900</td> </tr> <tr> <td>제2호</td> <td>10,000</td> <td>41,900</td> </tr> <tr> <td>제3호</td> <td>10,000</td> <td>19,500</td> </tr> <tr> <td>A42</td> <td>10,000</td> <td>17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일 비	숙박료	(1일당)		(1야당)	주	10,000	10,000	제1호	10,000	41,900	제2호	10,000	41,900	제3호	10,000	19,500	A42	10,000	17,500
	일 비	숙박료																						
(1일당)		(1야당)																						
주	10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
제1호	10,000	41,900																						
제2호	10,000	41,900																						
제3호	10,000	19,500																						
A42	10,000	17,500																						

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“교통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하 고, 동란의 제3호 중 “해운항만청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 표의 지급액 외에 이사회들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임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별표 4제1호의 지급대상란중 “경기도 용진군”을 “인천광역시 용진군·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”으로 하고, 동표제2호의 지급대상란중 “수산청 소속”을 “해양수산부소속”으로 하며, 동표제12호의 구분란 및 지급대상란중 “체신부”를 각각 “정보통신부”로 하고, 동표의 지급방법란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부 分	도 서 지 역
경상남도	통영시 산양읍·육지면·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	
제주도	북제주군 축자면	

부 칙

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國內旅費規程 改正理由

國內旅費中 宿泊料 및 現地交通費의 支給單價를 現實化하고, 移轉費의 支給項目에 積載 및 下車시 소요되는 費用을 포함하며 기타 現行制度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主要骨子

가. 公務員의 國內出張시 支給하는 旅費中 宿泊料를 平均 13파센트 引上하고, 現地交通費의 명칭을 日費로 변경하여 이를 54퍼센트 引上함(今第15條·第16條 및 別表 2).

나. 赴任公務員에게 移轉費를 지급함에 있어서 移徙貨物의 運送費외에 積載 및 下車에 소요되는 人件費등도 지급하도록 함(今別表 3).

<법제처 제공>

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“교통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하 고, 동란의 제3호 중 “해운항만청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 표의 지급액 외에 이사회들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임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별표 4제1호의 지급대상란중 “경기도 용진군”을 “인천광역시 용진군·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”으로 하고, 동표제2호의 지급대상란중 “수산청 소속”을 “해양수산부소속”으로 하며, 동표제12호의 구분란 및 지급대상란중 “체신부”를 각각 “정보통신부”로 하고, 동표의 지급방법란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分	부 分	도 서 지 역
부산광역시	강서구 천연동	
인천광역시	옹진군	
경기도	강화군 삼선면·교동면 및 서도면 안산시 대부동	
전라북도	부안군 위도면	
전라남도	신안군 여천군 둘산읍·남면·회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·봉태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원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·노회읍·금강면·성일면·보길면 ·신지면·고금면·약산면·청산면 및 소안면	
경상북도	울릉군	